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40
----------	-----

2017. 2. 21.(화)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7년 1월 6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7. 1. 19.) : 상정(심사보류)
- 제3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17. 2. 21.) : 재상정(원안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

가. 제안이유

-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으로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재위탁 하고자 2015. 3. 27.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기 간 : 2017년 ~ 2018년 (2년간)
- 위탁방법 : 재위탁 심의위원회 심사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 위탁사무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경형)

- 가. 충청북도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이 적고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 사용 정착을 위해 2014. 8. 27.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공모로 선정된 ‘생태교육연구소 터’에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2016. 12월말까지 운영해 왔음
- 나. 상기내용을 검토한 바,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단체에게 재계약 하려는 사안으로,
- 다.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는 3년간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홍보,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의 사업추진을 환경부에서 실시한 총괄평가 기준을 통과하여 2017년 국비 지원 결정 받은 것으로 보아 수탁업체의 전문성은 있다고 판단됨
- 라. 다만, 평가 기준이 사업 목표대비 실적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만 있어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활동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녹색제품에 대한 인식도 조사와 같은 정성평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계획」

의안번호	제540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환 경 정 책 과 장)
제출연월일	2017년 1월 6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제540호
----------	-------

제출연월일 : 2017년 1월 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환경정책과장)

1. 제안이유

- 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교육·홍보 등으로 녹색제품 소비 촉진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필요
- 나.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가. 기 간 : 2년(2017년 ~ 2018년)
- 나.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 601호
- 다. 공간규모 : 165 m² 정도
- 라. 위 탁 비 : 연 2억원(국비 1억, 도비 1억)
- 마. 수탁기관 : 생태교육연구소'터'
- 바.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 나. 관계 법령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 계획

2017



바이오휘경국
환경정책과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운영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 제28조

○ 센터현황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예체로 19번길 8, 601호
 - 운 영 : 생태교육연구소 “터”에 위탁 운영(근무인원 : 6명)
 - 예산지원 : 연 2억원(국비 1, 도비 1) / 인건비 40%, 운영비 60%
- ※ 전국적으로 우리 도 포함 5개 시·도에서 운영중

○ 위탁사무

- 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구매 및 소비 등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 녹색제품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
- 지역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녹색제품 보급 촉진에 관한 사업 등

○ 필 요 성

- '14. 8월부터 3년 여간 운영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방지에 기여
-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율이 포함되어 있어 “가”등급 달성에 기여

※ 녹색제품 구매율 :

('13)
13.5%

 ⇒

('14)
13.9%

 ⇒

('15)
28.9%

 ⇒

('16.11)
31.0%

□ 추진경과

- '14. 3. 18.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터”선정(공모)
- '14. 8. 27.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개소
- '14. 8. 27. ~ '16. 12. 31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 '16. 12. 5. : '17년 국비 지원 총괄위원회 평가 실시(환경부)
 - ※ 3년간 운영실적 총괄위원회 평가를 통해 국비지원 결정(향후 1년 단위 평가)
- '16. 12. 13. : 국비(1억) 지원 확정으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결정
- '16. 12. 19. ~'17. 1. 6.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이전 설치
- '16. 12. 21. : 재계약을 위한 서면심의(재계약 의결)
 - ※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위탁업체인 ‘터’를 우선 평가
- '16. 12. 26.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사무의 위·수탁 협약

□ 소요예산

- 사 업 명 : 충청북도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 사 업 비 : 연 20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 매년 12월 초 1월~11월 까지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연 국비지원 결정

□ 향후계획

○ 충청북도 녹색구매 지원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17. 1

관련법령 발췌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15. 3. 27>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4. 8. 2,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녹색제품의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등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녹색생활이 실천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지침(환경부, 2016. 3. 4.)

제28조(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의 중단이나 축소, 지원센터 위탁기관 변경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